

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종환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318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10월 20일

발 의 자: 이종환, 강석주, 고광민,
김영철, 김용호, 김원중,
김원태, 김재진, 김종길,
김지향, 김태수, 김형재,
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
서상열, 심미경, 오금란,
유만희, 유정희, 윤기섭,
윤종복, 이상욱, 이성배,
이종태, 이희원, 임춘대,
최민규, 홍국표, 황유정,
황철규 의원(31명)

1. 제안이유

-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에서 위임된 “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” 따라,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, 용역 등 서비스를 총구매액의 1.1%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하도록 확대됨(이전 1%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1.1%)에 따라,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100분 1 이상에서 100분의 1.1 이상으로 상향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3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“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” [시행 2024. 8. 7.] [보건복지부고시 제2024-140호, 2024. 7. 17., 일부개정.]

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법 제7조제4항”을 “법 제7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법 제7조제3항 및 「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」 제2조에 따라 100분의 1.1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우선구매 대상물품) ①·② (생 략)</p> <p>③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 은 <u>법 제7조제4항</u>에 따라 우선 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(우선구매 대상물품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 <u>법 제7조제5항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6조(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) ①·② (생 략)</p> <p>③ <u>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 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 별 총구매액(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, 공사는 제외한다)의 10 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, 10 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. 다만, 공공기관의 특 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 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 서비 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6조(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 산품 구매목표비율은 법 제7조 제3항 및 「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 정 등에 관한 기준」 제2조에 따 라 100분의 1.1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 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 과 노무용역 등 서비스의 범위 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¹⁾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과 조례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같은 조례 제6조(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)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100분의 1에서 100분의 1.1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각종자료 등 검토결과²⁾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과
재정분석과장	이 선 희
추계세제팀장	김 중 현
추계 분석관	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.

1) [상위법 위임규정]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 위임규정인 「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」

2) [구매목표비율 증가에 의한 재정소요 검토]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물품의 경우 시장가격에 비해 비싸다는 인식이 있으나, 일부 품목은 시장가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저렴하기도 하므로 해당 규정의 영향으로 물품구매 예산 총액이 증가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